

건축허브를 활용한 공모 공고 · 심사결과 공개 및 심사위원 위촉 절차 안내

시행 : 2027. 1. 1.

본 자료는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000호 및 제2026-000호에 따른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및 「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」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 과정에서 관계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료로, 개정안에 따라 발주기관등이 기존 세움터가 아닌 건축허브(<https://hub.go.kr>)를 활용하여 공모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건축허브를 활용하여 공모를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방식으로 진행

2026. 4.



국토교통부

※ 관련내용 : 시행령 개정안 제17조제7항,
지침 개정안 제5조제2항, 제11조제3항·제5항·제8항

□ **발주기관등**(발주기관, 전문기관)이 공모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검증하고
건축허브로 공모 및 심사위원을 최종 위촉하는 절차입니다.

단계	세부절차(개정안 기준)	비고
1. 사전준비	1. 발주서류 준비(담당자)	
	2. 심사위원(예비포함) 사전검증(담당자)	
	- 위원회 추천(제11조제6항)	
	- 자격·비율검증(제10조, 제11조제5·6항)	1)참고
	- 심사총량제 위반 자체검증(제11조제9항)	
	- 사전접촉 서약 확인(제12조제3항)	
2. 공고 및 심사위원 위촉	- 건축허브 POOL 등록 확인(제11조제3항)	
	1. 발주기관등 담당자 회원가입(담당자)	
	2. 계정발급 승인(국토부)	익일 12시 이내
	3. 공고 등록 배너로 이동(담당자)	
	4. 공모정보 입력(담당자)	
	- 공모명, 사업규모 등 입력	
	- 심사위원 명단 입력(성명, 소속, 자격정보)	2)참고
	- 심사위원 심사횟수 검토요청 버튼 클릭	
	5. 심사횟수 검증(국토부)	익일 12시 이내
	6. 검증결과 통보(국토부, 시스템상)	
	- 승인 시, 2-7번으로 이동(담당자)	
	- 미승인 시, 1-2번으로 이동(담당자)	3)참고
	7. 심사위원 최종 위촉 클릭(담당자)	
	8. 최종 공고 버튼 활성화(시스템)	
	9. 최종 공고 클릭(담당자)(제5조제2항)	4)참고

- 1) 자격은 건축허브 POOL상 등록된 자격(중복 여부와 관계없이 심사위원이 POOL 등록 시 선택한 1개의 자격(건축사 등))으로 판단합니다.
- 2) 설계비 20억원 이상은 심사횟수 검증 이전에 공고 버튼이 활성화(2-8번)되며, 명단 입력(2-4번 중 일부) 및 검증(2-5·6·7번)을 공고(2-9번)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.
- 3) 미승인된 심사위원이 건축허브 POOL 미등록된 자인 경우, 미등록자에게 POOL 등록 신청을 요청합니다. 심사횟수 초과로 통보된 경우 신규 위원을 추천받습니다.
- 4) 공모 공고 시점은 2-9번 최종 공고 클릭 시점(자동공고 시점 설정 가능)입니다.
- 5) 2-5·6번 심사횟수 검증은 향후 시스템 안정화 등을 거쳐 자동화할 예정입니다.

※ 관련내용 : 시행령 개정안 제17조제7항,
지침 개정안 제14조제1항, 제11조의3제5항, 제12조제6항

- ☐ 발주기관등(발주기관, 전문기관)이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결과를 건축허브로 공개하는 절차입니다.

세부절차(개정안 기준)	비고
1. 공고 담당자 로그인(담당자)	
2. 본인 공고 클릭(담당자)	
3. 심사결과 등록 클릭(담당자)	
4. 심사결과서류 등록(담당자)	
- 참석 심사위원 및 입상자 명단	입력 칸 제공
- 심사위원별 투표결과 및 총괄표	자유양식
- 입상작에 대한 심사위원별 사유서	자유양식
- 입상작의 이미지	입력 칸 제공
- 전문위원회 의견서 및 의결사항	자유양식
- 사전접촉 관련 서류	자유양식
- 기타 발주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	자유양식

□ 심사위원 POOL 등록 신청(지침 안 제11조제3항)

- ☞ 건축허브 누리집(<https://hub.go.kr>) → 소식알기 → 공지사항(심사위원 POOL 신규등록 이용가이드) 확인

□ 심사위원 심사횟수 검증 결과의 유효성

- ☞ 1쪽 2-6번 심사위원 심사횟수 검증 결과는 건축허브상 집계 기반으로 제공할 예정으로, 제도시행 초기 건축허브 운영이 정착되기 이전에는 발주기관등이 자체적으로 심사횟수를 이중 검증할 필요(향후 안정화 시 원활한 심사총량 확인 가능)
- 이와 별도로, 개별 인원의 심사횟수는 타 기관의 최종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업데이트되므로, 발주기관등은 사전준비 시점과 공고 시점 사이에 타 기관이 해당 심사위원을 위촉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할 필요

□ 시스템 접속 시점

- ☞ 개정제도를 반영한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이며, '27년 1월 1일 공개할 예정
- 세부 매뉴얼은 '26년 4분기 중 공개
- 시행일 이전에는 기존처럼 세움터를 활용하여 공모 공고 및 심사결과 공개(지침 안 부칙 제2조 : '26년 12월 31일까지는 건축허브를 세움터로 봄)

□ 행정망으로 접속 가능 여부

- ☞ 행정망으로 접속 가능
- 다만, 현재 행정망에서 건축허브 접속이 안되는 기관은 자체 보안정책으로 접속이 차단된 상태로, 공고 전 미리 보안해제 신청을 하면 접속할 수 있음('26년 4분기 중 보안해제 신청 수요를 확인할 예정)

□ **공고 채널 일원화**(지침 안 제5조제2항)

- ☞ 공고는 건축허브 단일 창구(이후 세움터는 폐쇄)를 통해야 하며,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은 건축허브 외의 선택 사항(자체 시스템만 사용하는 경우는 지침 위반)
- 공고 시에는 심사위원 심사횟수 검증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기간을 확보할 필요

□ **건축허브 활용 권고**(지침 안 제5조제1항)

- ☞ 건축허브를 통해 공모 공고, 심사결과 공개 외 공모안 접수, 심사진행 등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발주기관등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 검토해야 함

□ **설계비 20억원 이상의 심사위원 명단 공개**(지침 안 제5조제2항)

- ☞ 담당자가 공고 시 입력한 공개예정일 이전에 건축허브에 다시 접속하여 1쪽 2-4번 심사위원 명단 입력을 진행하고 이후 심사횟수 검증 요청 및 결과에 따라 심사위원 최종 위촉
- 공개예정일 이전에 위촉한 경우 해당일에 맞춰 명단이 공개되며, 미입력 시 담당자에 경고 메시지 발송

※ 상기 내용은 시스템 개발 경과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,
'26년 4분기 매뉴얼을 통해 확정하여 공개